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45 호】

2014년 01월 28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3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5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17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36호	도로명주소 고시	28
고양시 고시 제2014-37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33
고양시 고시 제2014-38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5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 월 2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시행)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한 시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9조의1 및 제9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 나.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고 조례에 의한 세율적용(탄력세율)이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2017.1.1.부터 가능함에 따라 탄력세율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삭제)
- 다. 재산세 일괄부과징수의 대상을 “산출세액” 에서 “부과세액” 으로 분

명히 함(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24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9조의1 및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1(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9조의2(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산출세액”을 “부과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세정과장 이 현 옥
	팀 장 성 명	세원관리팀장 이 종 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종 을 (8075-224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제4장 지방소득세</u> <u>제1절 소득분</u> <u>제10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세율</th></tr> <tr> <td>소득세분</td><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tr> <tr> <td>법인세분</td><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tr> </table>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u>제3절 종업원분</u> <u>제9조의1(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u> <u>제9조의2(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u> <u>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 <u>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 <u>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u> <u><삭제></u> <u><삭제></u> <u><삭제></u>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종업원분	<삭 제>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삭 제>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 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납기) 부과세액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 월 2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2013.11.11.)에 따른 한시기구 폐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단 명칭 및 활동 분야를 변경하여 시행정 주민참여 분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단 명칭 및 활동 분야를 변경함(안 제11조제3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451~245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주민”으로 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시”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관내 사업체 종사자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민참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기획주민참여단 : 주민참여, 주민자치, 교육지원, 문화예술, 체육진흥, 도서관 등
2. 민생·환경주민참여단 : 일자리, 지역경제, 환경보호, 생태하천, 청소, 상수도, 공원녹지관리, 농업정책 등
3. 창조산업주민참여단 : 마이스산업, 국제통상, 관광개발, 첨단지식산업 등
4. 도시·교통주민참여단 : 도시계획, 주택, 도시정비, 뉴타운, 교통정책, 대중교통, 도로정책, 재난관리 등
5. 여성·복지주민참여단 : 복지정책,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위생정책, 보건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장명	주민자치과장 이 양 천
	팀장명	참여자치팀장 박 성 식
	담당자 성명·전화	참여자치부팀장 이 명 의 (8075-245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u>고양시(이하 “시”라 한다)</u>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u>시</u>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u>고양시</u>.....<u>고양시</u>.....
제2조(정의) (생략)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를 말한다. 가. 주소 또는 거소를 <u>시</u>에 두고 있는 <u>자</u> 나. <u>시</u>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u>사업체의 종사자</u> 2.~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사람을</u> 가.<u>고양시(이하 “시”라 한다)</u>..... <u>사람</u> 나. <u>관내 사업체 종사자</u>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참여단) ①~② (생략) ③ 주민참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기획주민참여단 : 주민참여, 주민 자치, 교육지원, 문화예술, 관광개발, 체육진흥, 도서관 등 2. 민생경제환경주민참여단 : 일자리, 지역경제, 환경보호, 생태하천, 청소, 상수도, 공원녹지관리 등 3. 창조성장개발주민참여단 : 방송영상, 국제통상 등 4. 도시·교통주민참여단 : 도시계획, 주택, 도시정비, 뉴타운, 교통정책, 대중교통, 도로정책, 재난관리 등 5. 여성·복지주민참여단 : 복지정책,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위생정책 등	제11조(주민참여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참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기획주민참여단 : 주민참여, 주민 자치, 교육지원, 문화예술, 체육진흥, 도서관 등 2. 민생·환경주민참여단 : 일자리, 지역경제, 환경보호, 생태하천, 청소, 상수도, 공원녹지관리, 농업정책 등 3. 창조산업주민참여단 : 마이스산업, 국제통상, 관광개발, 첨단지식산업 등 4. 도시·교통주민참여단 : 도시계획, 주택, 도시정비, 뉴타운, 교통정책, 대중교통, 도로정책, 재난관리 등 5. 여성·복지주민참여단 : 복지정책,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위생정책, 보건 등

그 밖의 참고 사항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제, 소송에 관한 사항
3. 고양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5.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복무, 의전에 관한 사항
7. 구 및 동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8. 국가 및 중앙부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9. 자치행정, 주민자치, 자원봉사, 선거,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0.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제6조(민생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민생경제환경국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를 둔다.

② 민생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지원,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및 산업행정,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6. 하천의 생태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아,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 개발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위생관리·장묘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족과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11.11>
5.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창조성장개발국에 두는 과) ① 창조성장개발국에 마이스산업육성과, 신한류관광과, 첨단지식산업과를 둔다.

② 창조성장개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3.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 국제 전시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특별도시 및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5. 전시컨벤션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신한류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7. 의료관광자원의 개발과 해외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식정보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안전국에 두는 과) ① 교통안전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교통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에 관한 사항
2.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5. 노상정비, 주정차지도에 관한 사항
6.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상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인적·사회적·자연적),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10. 민방위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정비계획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일반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6. 도시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
8.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가 소유한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고양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브랜드 관광상품 산업 활성화

3. 주요골자

- 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사업과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구성 등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나. 브랜드 관광상품 제작 판매 업체 신청과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등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우수 참여 부서와 우수 제작·판매 업체 시상, 지원, 업무위탁 등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디자인 등록 협의, 준용 등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2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신한류 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 살과의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창조성장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시상) 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산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2. 관광상품 평가 또는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선정

3.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상설매장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상설매장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기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하였거나 상품을 훼손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디자인 등록 협의) ① 시가 등록한 상표를 활용하여 상품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법 제5조의10에 따라 공동출원 즉, 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③ 공동출원 상품에 대하여 시는 법 제8조 선출원 등록원칙에 따라 상품 디자인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단, 출원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준용) ① 제15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신한류관광과
입안자	과장 성명	신한류관광과장 이재필
	팀장 성명	신한류관광팀장 박재웅
	담당자 성명·전화	성남신 (8075-3404)

관계법령 발췌서

【상표법】

제5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1. 제19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2.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신청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선출원)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 삭제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 28.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8 외 6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8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74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58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4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36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28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26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20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10-18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한 도로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95번길 32-18	20120120	호국로 시점에서 15950m에 위치한 도로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68-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444	20090710	광역도로로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5, 16, 17, 18, 21-2, 산7-1, 산11-2, 산7-4, 산7-5, 산8-6, 산8-7, 산8-8, 산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81번길 28	20100126	혜음로 시점에서 81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2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83번길 53-11	20100126	행주로 시점에서 83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89-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14번길 6-27	20131022	통일로 시점에서 12140m에 위치한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89-9, 58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14 번길 6-19	20131022	통일로 시점에서 12140m에 위 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94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81-1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74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68-29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68-24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64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61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48-47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48-42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48-36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48-27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48-18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48-14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33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31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 번길 110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번길 106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02번길 105	20120327	원당로 시점에서 4020m에 위 치한 도로	
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59-25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59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45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3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6-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39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76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3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74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68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58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46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24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8-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11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208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199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92번길 188	20100126	원당로 시점에서 3920m에 위 치한 도로	
4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93번길 47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930m에 위 치한 도로	

4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4-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1길 25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1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83	20131022	고유지명을 활용한 일련번호 방식을 도로명에 적용	
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7-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285 번길 33-9	20100126	대양로 시점에서 2850m에 위 치한 도로	
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58-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91- 13	20110715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6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753-1	20100126	권율장군의 행주대첩 승전을 기리기 위한 도로명	
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3-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81-9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7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189-21	20110720	은곡-마곡마을의 한 자락을 활 용하여 도로명 부여	
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75-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 로 83-13	20110715	식사지구내 마을명칭을 도로명 에 적용	
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3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3 길 54	20110715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5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448-9, 54-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02번길 132	20100126	백마로 시점에서 5020m에 위 치한 도로	
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승로 113번길 36-14	20100126	강승로 시점에서 1130m에 위 치한 도로	
6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5-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75번길 57-34	20100126	탄중로 시점에서 2750m에 위 치한 도로	
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36, 1643, 1647, 1646, 164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지 하97-27	20090911	일산-탄현간 도로로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256-12, 256-51, 256-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 12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120m에 위치한 도로	
6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81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29번길 44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3290m에 위 치한 도로	
6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77-22, 277-23, 278-29, 278-6, 278-7, 27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75	20090824	옛 철도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 월 2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451-9 외 5 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세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07-1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07-1, 107-4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451-9	2014.1.28.	관련지번 추가	
2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43-19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43-19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5-6	2014.1.28.	관련지번 변경	
3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743-12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43-12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5-10	2014.1.28.	관련지번 변경	
4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9-1,39-2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9-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9-30	2014.1.28.	관련지번 변경	
5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21-4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20-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164-19	2014.1.28.	관련지번 변경	
6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25, 1009, 100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09, 1008	고양시 덕양구 무민로35번길 28-9	2014.1.28.	관련지번 변경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223번길 75 외 5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연번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로223번길 75		2014.1.28.	건물신축에 의한 멸실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444		2014.1.28.	건물신축에 의한 멸실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8		2014.1.28.	건물신축에 의한 멸실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12		2014.1.28.	건물신축에 의한 멸실	
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2번길 14		2014.1.28.	건물신축에 의한 멸실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381-9		2014.1.28.	건물신축에 의한 멸실	